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24호

관악구 봉천동 945-11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4조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관악구 봉천동 945-11 일원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관악구 봉천동 945-11 일원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장

I.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관악구 봉천동 945-11 일원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945-11번지 일원
- 면 적 : 1,130.0㎡

2. 촉진지구 지정일 : 2024년 11월 7일

3. 사업의 종류 :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

4. 시행자의 성명 및 소재지

- 명 칭 : 주식회사 좋은책신사고
- 대표자 명칭 : 홍 범 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3(마곡동, 새싹타워)
- 법인등록번호 : 110111-1163437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1	봉천동	945	11	대	616.6	-	주식회사 좋은책신사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3(마곡동, 새싹타워)	100%	-	-	-
2	봉천동	945	12	대	106.8	-	주식회사 좋은책신사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3(마곡동, 새싹타워)	100%	-	-	-
3	봉천동	945	21	대	103.8	-	주식회사 좋은책신사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3(마곡동, 새싹타워)	100%	-	-	-
4	봉천동	945	22	대	144.8	-	주식회사 좋은책신사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3(마곡동, 새싹타워)	100%	-	-	-
5	봉천동	945	23	대	158.0	-	주식회사 좋은책신사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3(마곡동, 새싹타워)	100%	-	-	-
합계					1,130.0	-	-					

○ 물건조서

- 대상지 내 건축물 및 지장물 3개동은 2002.11.29.멸실, 2019.06.10. 등기기록 폐쇄,
1개동은 2003.10.31.멸실, 2019.06.10. 등기기록 폐쇄로 인한 잔존 건축물 및 지장물은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사거리 일대	573,347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95호 (1996.7.13.)	-

7.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4층 전략주택공급과(☎02-2133-6297) 및 관악구청 본관 6층 건축과(☎02-879-640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함

II.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 명 칭 : 관악구 봉천동 945-11번지 일원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945-11번지 일원

○ 면 적 : 1,130.0㎡

○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

－ 대상지의 위치적 특성과 개발가능성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주거문제 개선을 위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을 도입,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의 주거 빈곤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 환경 개선 및 역세권·가로변 활성화를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고자 함

2. 시행자의 성명 및 소재지

○ 명 칭 : 주식회사 좋은책신사고

○ 대표자 명칭 : 홍 범 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3(마곡동, 새싹타워)

3. 사업시행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 사업시행기간 : 지구지정일 ~ 2026년 12월 31일

○ 재원조달계획 : 자기자본

4.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130.0	-	-	100.0	
주거지역	소 계	1,130.0	-	1,130.0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130.0	감) 1,130.0	-	0.0	
	준주거지역	-	증) 1,130.0	1,130.0	100.0	

※ 해당 조서의 해당 사업 용도지역결정조서만 표기하였음

5.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비 고
합 계	1,130.00	100.00	
주택건설용지	1,130.00	100.00	

※행정절차 이행시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측량성과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6. 인구·주택 수용계획

○ 계획인구수 : 132인

○ 세대수 : 92세대

구 분		세대수(세대)	비율(%)	수용인구(인)	비율(%)
공공임대	47A	4	4.35	11	8.05
	47B	6	6.52	16	12.08
	47C	4	4.35	11	8.05
	52	3	3.26	8	6.04
	소 계	17	18.48	45	34.23
SH선매입	23B	2	2.17	2	1.52
	52	2	2.17	5	4.03
	소 계	4	4.35	7	5.55
공공지원민간임 대	23A	8	8.70	8	6.08
	23B	46	50.00	46	34.95
	25	8	8.70	8	6.08
	27	4	4.35	4	3.04
	46	1	1.09	3	2.01
	47B	1	1.09	3	2.01
	51	1	1.09	3	2.01
	52	2	2.17	5	4.03
	소 계	71	77.17	79	60.22
합 계		92	100.00	132	100.00

※가구당 인구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적용

7.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8.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1) 환경보전계획

가. 생태면적 확보

- 사업시행시 대상지 내 생태면적률은 자연지반녹지, 옥상녹화, 투수포장 등을 통한 피복형 유형과 식재형 유형을 적용한 결과 생태면적률은 29.43%로 계획

나. 일조영향 예측 및 저감

- 대상지 북측으로 40m 도로에 접하고 있어 정북일조 고려 대상이 아니나, 공동주택 채광등

의 확보를 위하여 건물높이, 배치계획 등을 수립

다. 오염물질 저감

- 발생 폐기물의 감용, 감량 및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계획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성상별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성상별(재활용성, 가연성, 불연성)로 보관용기를 설치토록 하며, 관악구와 협의하여 수집·운반 처리토록 할 계획임
- 생활계폐기물은 활동인구에게 지속적인 계몽을 실시하여 폐기물의 감량과 위생적인 분리수거가 가능토록 하고, 분리수거함은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 배출시부터 분리수거를 적극 유도함
- 운영시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될 예정으로 관악구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방침에 의거하여 적정 처리토록 할 계획임

라. 소음·진동 저감

- 공사시 소음저감대책
: 규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저소음 건설기계나 적정용량의 건설기계를 사용
- 공사시 진동저감대책
: 공사장비에 의한 진동을 저감하기 위하여 공사강도를 조정토록 하되, 가능한 한 저진동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공사장비 가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 운영시 소음저감대책
: 본 계획구역 사업시행시 계획건축물의 주요 용도에 따라 미국냉동공조기술자협회(ASHRAE)의 용도별 소음기준을 참조하여, 이에 부합할 수 있는 차음설계(창호 및 외벽 계획)를 통해 이용객에 대한 교통소음영향을 최소화

2) 보전대상지 설정 및 보전계획

- 본 사업시행에 따른 조정녹지 조성 및 오픈스페이스 공간 마련, 녹지체계 구축 등 환경보전계획을 통해 도심지 내 생태 및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할 계획임

3) 탄소저감계획

가. 녹지계획

- 탄소저감을 위해 사업지구 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등)하고, 녹지공간 내 조경식재 시 배기가스에 강하고 환경정화능력이 강한 수종을 식재토록 하여 대기질 정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계획

나. 녹색교통 활성화 유도

- 대상지 내 녹지 및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로폭원을 적정하게 조성하여 보행, 자전거 등을 통한 녹색교통이 활성화되도록 계획
- 나눔카 등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탄소배출량 저감 유도

다. 저탄소 친환경단지 조성

- 운영시 난방연료 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열손실방지를 위해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함

9.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붙임]

1. 도시관리계획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기정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사거리 일대	573,347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95호 (1996.7.13.)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573,347.0		573,347.0	100.0	
주거지역	소계	447,500.7		447,500.7	78.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5,929.4		5,929.4	1.0	
	제2종일반주거지역	3,447.0		3,447.0	0.6	
	제3종일반주거지역	181,428.6	감)1,130.0	180,298.6	31.5	
	준주거지역	256,695.7	증) 1,130.0	257,825.7	45.0	
상업지역	소계	125,846.3		125,846.3	21.9	
	일반상업지역	125,846.3		125,846.3	21.9	

□ 용도지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관악구 봉천동 945-11,12,21, 22,23	제3종일반주거 지역	준주거지역	1,130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청년안심주택 건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

□ 용도지구(미관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교통시설 : 변경없음
- 공간시설 : 변경없음
-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없음
- 공공 및 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 가구 및 획지계획 기준 : 변경없음
- ☐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 ☐ 최대개발규모 : 변경없음

나.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 ☐ 건축물의 불허용도계획
- － 불허용도 결정조서 : 변경

구 분			불허용도	비 고
기정	U3	전층	- 미관지구 불허용도(미관지구일 경우) - 기숙사 - 운수시설 - 2종근린생활시설중(안마시술소)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취급소, 액화가스취급소,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제외)	준주거지역 (간선가로변)
		1층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철물점	
	U4	전층	- 근린생활시설 중 비디오물감상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 교정시설 -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세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제외) - 학교시설 보호지구인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7조에 해당하는 용도	준주거지역 내부
		1층	- 제조업소, 수리점	

구 분			불허용도	비 고
변경	가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사행행위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 유사 성인전용업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 - 위락시설 - 공장 - 정교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발전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장례시설 - 야영장시설	

☐ 건축물의 불허용도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	불허용도(U3,U4) 변경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안심주택 건립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불허용도를 결정(변경)하고자 함

□ 건축물의 권장용도계획 : 변경없음

－ 권장용도 조서 : 변경없음

□ 건축물의 지정용도계획 : 신설

－ 지정용도 결정조서 : 신설

구 분	내 용	비 고
신설	1 － 공동주택(주거복합) ※비주거용도 : 지상1층~지상2층	－ 청년안심주택 건립을 위해 지정용도 신설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항 제2호의 청년안심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 건폐율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사유
건폐율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준주거지역 : 60%이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준용

□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사유
용적률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용적률 : 230% 허용용적률 : 250%	준주거지역 기본용적률 : 400%이하 상한용적률 : 500%이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준용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에 따라 주거비율 85%이상, 비주거비율 5%이상(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 건축물의 높이계획 : 변경

－ 건축물 높이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사유
높이	제3종일반주거지역 (남부순환도로변) : 35m이하	준주거지역 60m이하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3-1에 따른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구단위계획에 결정되어있는 최고높이'는 심의를 거쳐 완화

□ 건축물 배치계획 : 변경없음

－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건축물의 형태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공공기여 계획

구 분	용적률	공공기여 기준	기부채납 면적	비 고
공공임대주택	기본용적률 (부지면적)	400%이하	부지면적의 10.00%이상 (113.00㎡이상)	총 92세대 중 공공임대주택 17세대 계획 : 47A TYPE(4세대), 47B TYPE(6세대), 47C TYPE(4세대), 52 TYPE(3세대) ■ 세대수 － 기본 5세대(5.43%) / 상한 12세대(13.04%) － 총 공공기여 세대수 : 17세대(18.48%) ■ 부속토지 － 기본 113.91㎡(10.08%) / 상한 113.19㎡(10.02%) － 총 부속토지 면적 : 227.09㎡(20.10%)
	상한용적률 (연면적)	498.68%이하	완화용적률 1/20이상 (498.68%~400%)/2 =49.34%이상 (557.55㎡이상)	
			－ 부지면적 기준 113.91㎡(10.08%) －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 251.349㎡(5세대) － 부지면적 기준 113.19㎡(10.02%) － 공공임대주택 제공 연면적 : 566.97㎡(12세대)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대지내 공지 및 통로계획 : 변경없음

☐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4)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 : 신설

구 분		적용기준		적용내용	비 고
공공기여율		• 기본공공기여율 : 부지면적의 10.00% 이상 주1) - 1,130㎡ x 10.00% = 113.00㎡		• 기본공공기여 : 113.91㎡ (10.08%) [5세대]	• 총92세대중 공공임대주택 17세대 공공기여
		• 완화용적률(98.68%)의 50% 공공임대주택 제공 - 용적률 : 49.34%이상 - 연면적 :557.55㎡이상		•추가공공기여 :50.17% [12세대] -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산정 연면적 :566.97㎡ (50.17%) [완화용적률 98.68%의 50% :49.34%]	
건축 용도별 비율	주거비율	• 85% 이상		• 주거 : 비주거 = 89.47% :10.53% (용적률 기준)	
	비주거비율 주2)	• 5% 이상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주택건설기 준	주택규모	• 1인가구 : 전용면적 23㎡이상 • 2인 이상 세대 : 전용면적 40㎡이상(2룸이상)권장		• 공공임대 : SH선매입 : 공공지원민간임대 - 세대수 기준 : 18.48% : 4.35% : 77.17% - 건축물 연면적 기준 : 26.21% : 4.85% : 58.75% • 공공임대주택 : 17세대 : 47A TYPE(4세대), 47B TYPE(6세대), 47C TYPE(4세대), 52 TYPE(3세대) • SH선매입 : 4세대 : 23B TYPE(2세대), 52 TYPE(2세대)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71세대 : 23A TYPE(8세대), 23B TYPE(46세대), 25 TYPE(8세대), 27 TYPE(4세대), 46 TYPE(1세대), 47B TYPE(1세대), 51 TYPE(1세대), 52 TYPE(2세대)	
건축물 형태	주거환경 미래지향적조성	• 2가지 이상 의무 이행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 친환경 건축물 - 커뮤니티 지원시설 - 수익형 임차시설	- 공공시설물 설치 - 서울시 건축물 심의 기준에 규정한 발코니 설치	• 친환경 건축물 • 수익형 임차시설(상생형 임차시설) : 계획 61.134㎡(지상2층)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3-3-다. 건립호수별 커뮤니티시설 면적의 50%이상 : 50㎡이상)	
주민 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3-13-가. 커뮤니티시설 설치면적 - 100호미만 : 100㎡이상		• 259.508㎡ 계획(지상15층)	

주1) 용도지역 변경(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시 부지면적의 10.0%이상

주2) 비주거비율은 용적률 기준으로 함.

※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개정 2023.07.06.)준용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3. 방재계획

1) 호우재해

- 사업지는 침수재해 발생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배수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을 통하여 사업대상지 내 침수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 공사 시 외부우수의 공사장 내 유입으로 인한 홍수 및 토사유출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비닐보호막 등을 설치하여 재해영향을 저감토록 계획
- 운영 시 우수유출 저감을 위하여 저류시설, 침투시설 계획

2) 지진재해

-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건축계획 수립 및 대피시설, 대응시스템 등을 구축
- 지진 등 재난발생 시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비 실시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1)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1	봉천동	945	11	대	616.6	-	주식회사 좋은책신사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3(마곡동, 새싹타워)	100%	-	-	-
2	봉천동	945	12	대	106.8	-	주식회사 좋은책신사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3(마곡동, 새싹타워)	100%	-	-	-
3	봉천동	945	21	대	103.8	-	주식회사 좋은책신사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3(마곡동, 새싹타워)	100%	-	-	-
4	봉천동	945	22	대	144.8	-	주식회사 좋은책신사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3(마곡동, 새싹타워)	100%	-	-	-
5	봉천동	945	23	대	158.0	-	주식회사 좋은책신사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3(마곡동, 새싹타워)	100%	-	-	-
합계					1,130.0	-	-					

2) 물건조서

- 대상지 내 건축물 및 지장물 3개동은 2002.11.29.멸실, 2019.06.10. 등기기록 폐쇄,

1개동은 2003.10.31.멸실, 2019.06.10. 등기기록 폐쇄로 인한 잔존 건축물 및 지장물은 없음

3) 토지취득방법 : 사업시행자 토지 확보 완료

4) 존치건축물의 공작물 처리계획 : 사업부지내 존치건축물, 공작물 등은 전면 철거 후 신축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 「주택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 해당 지자체인 관악구청에서 감리자를 선정하여 감리업무 수행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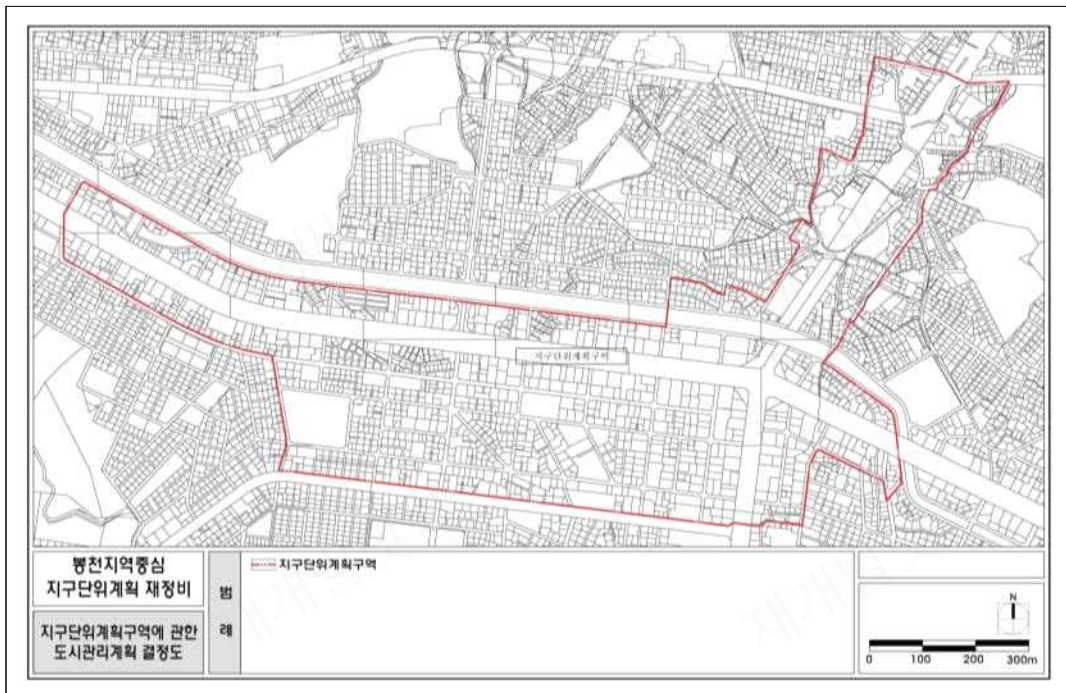
구 분	위 치		공급대상자	공급시기	비 고
	면적(㎡)	구성비(%)			
주택건설용지	1,130	100.0	자체사용	사용승인 이후	
합 계	1,130	100.0			

관계도면 : [붙임]

[공급촉진지구에 관한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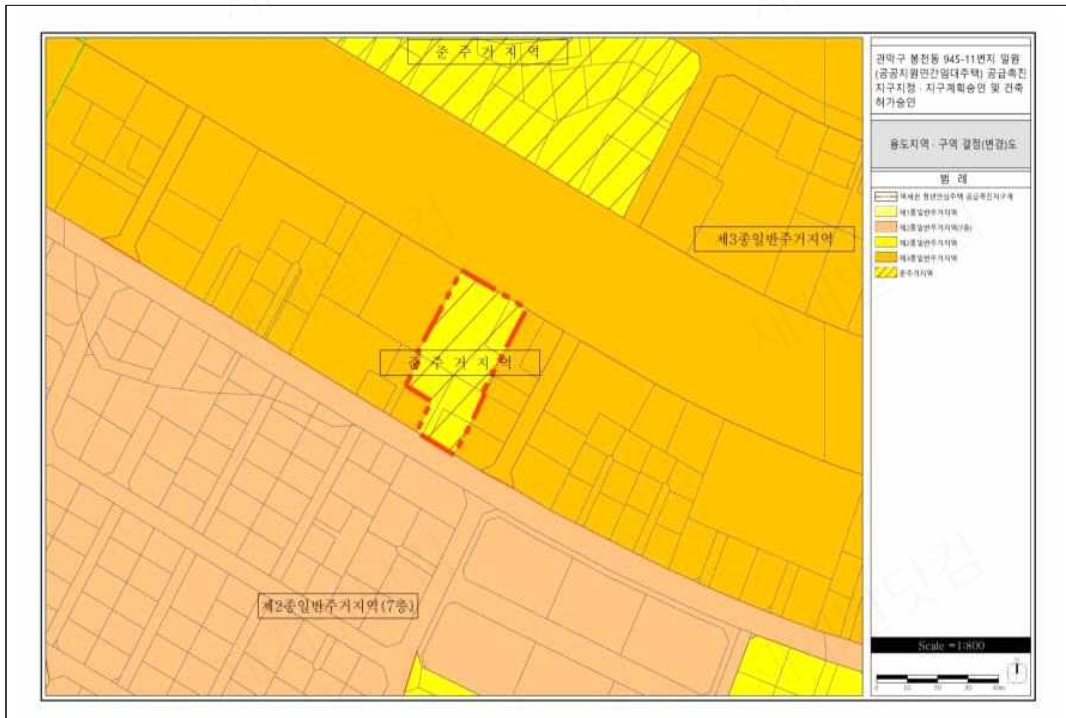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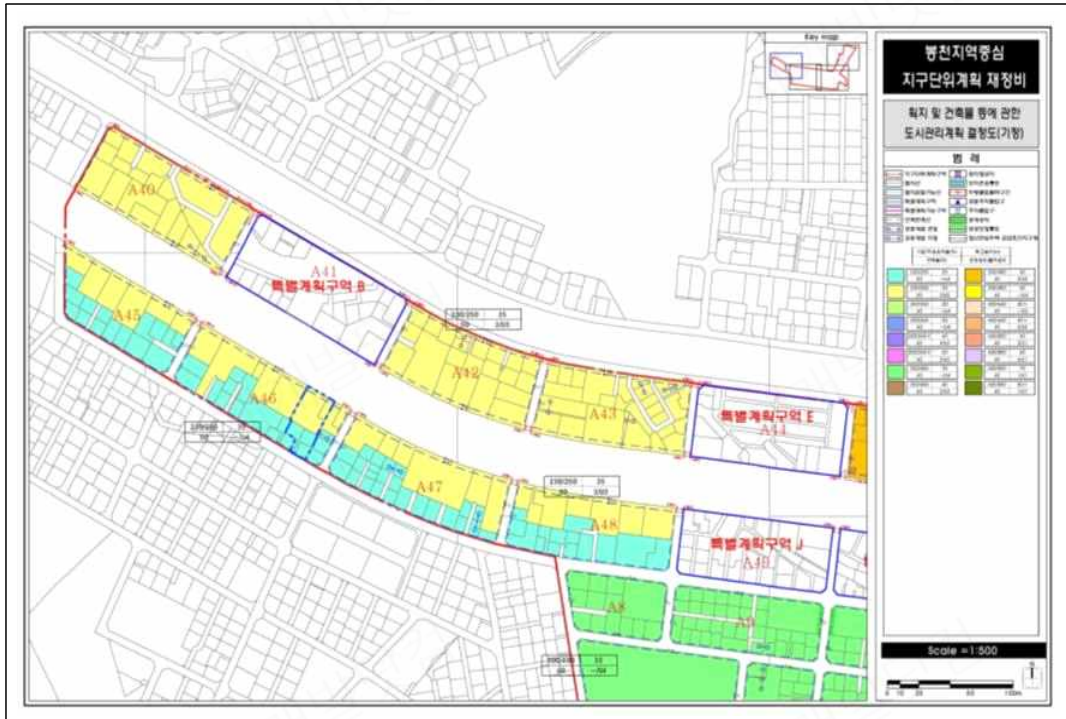
[용도지역·지구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



[용도지역·지구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